



[ 2019. 8. 20.] [ 366 , 2019. 8. 20., ]

( ) 044 - 200 - 5742, 5741

1 ( ) 「 」  
. < 2005. 9. 30., 2012. 10. 31.>

2 ( ) . < 1998. 9. 17., 2001. 10. 4., 2005. 9. 30., 2012. 10. 31., 2016. 5. 16.>

1. 「 」 ( " " ) 5 1 4 「 」 ( " " ) 5  
1 15 2 2 ( " " )

2. 7 3 2

3. 16

4. 13 2

4 2. 13 6

5. 3 4

3 1 7 " " 2 5

" " 1 5 1 3

6 , 6

. < 2016. 5. 16.>

1 「 」 57 4  
. < 2005. 9. 30., 2012.

10. 31., 2016. 5. 16.>

1 1 (

)

. < 2004. 2. 2.,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2016. 5. 16.>

3 ( ) 1 ( ) ( ) . <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1. .

2. . .

3. . ,

4. . ,

5.

6. ( )

1 「 」 36 1 . < 2011. 2. 18., 2013. 3. 24.>

( )

[ 2006. 6. 26.]

4 ( ) 3 가 2  
( ) . <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5 ( ) 1  
( ) ( )  
. < 2004. 8. 7., 2005. 9. 30., 2008. 3. 14., 2011. 2. 18., 2012. 10. 31., 2013. 3. 24.>

1.

2.

1

4

. < 2012. 10. 31.>

5 2( )

3 1

1

[ 2016. 5. 16.]

6 ( )  
. <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2016. 5. 16.>

1.

1 2. 5 2 2

2. 16 2

가

3. .

7 ( ) 3 2 3

( ) 「 」 60 2 「 」 1

. < 1999. 3. 27., 2005. 9. 30., 2007. 11. 23.,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2019. 8. 20.>

1

4

(

) . <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8 <1998. 9. 17.>

9 ( ) 10 , . < 2005. 9. 30., 2012. 10. 31.>

1. 「 」 ( " " ) ( " " ) 1 10

2.

7

3.

15

10 ( )

. < 1998. 9. 17., 2001. 10. 4., 2005. 9. 30., 2012. 10. 31., 2016. 5. 16.>

1. . 3

2. 가. 3 , 3 , 3 , 2  
3

. 「 」 36 2 「 」 2  
15

3. 가. 「 」 2 1 4 ( )  
3

3

4. ( 1 )

5. 1 , 2 3 ( 3 )  
1

.<

1998. 9. 17., 2012. 10. 31.>

[ 2012. 10. 31.]

11 ( ) 5 1 1 ( " " )  
5 ( ) .

< 2007. 5. 29., 2012. 10. 31., 2016. 5. 16.>

1. <2007. 5. 29.>

2. <2007. 5. 29.>

1

.< 2012. 10. 31., 2016. 5. 16.>

1. 13 2

1 2. 13 3

2. 13 4

3. 14 1

4. 14 3

4 2. 15 2 4

5. 16 4

6. 2 5 6

<2012. 10. 31.>

[ 2006. 6. 26.]

12 ( ) 13 3 60 2

11 1

. < 2012. 10. 31.>

13 4 .< 2017. 2. 1.>

- 1. 6 : ,
- 2. 6 : (1)· (2) (3)
- 3. : ,

13 4 11 1

.< 2012. 10. 31.>

14 3

[ 2007. 5. 29.]

13 ( ) 가

6

.< 1998. 9. 17., 2012. 10. 31.>

14 ( ) 5 3 ( " " )

7 ( )

2

2 , 2 2, 2 3, 3 , 4 6 11

.< 1998. 9. 17., 2001. 10. 4., 2005. 9. 30.,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2015. 1. 8., 2016. 5. 16.>

1. 「 」 87 . , .

가. : 가

. 「 」 53 :

. : 「 」 52

2. 5 1 15 2 ( )

)

2 2. 1 ( )

)

가.

.

.

.

.

.

2 3. 「 」 2 ( )

)

3. 1 3 3 ( )

4. 9

5. 1 ( 6 가 3.5 , 4.5 )

6. 13 2 :

7. 13 4

가.

. 가 ( )

- ( (減隻) )
8. 14 1 : ,
9. 14 3 :
10. 16 4 :
11. 2 5 6 :
- 1 「 」 36 1
- .< 2012. 10. 31., 2016. 5. 16., 2017. 7. 28.>
1. ( ) ( ) )
2. ( 1 7 ) )
3. ( " " ) )
- 「 」 7 ( ) )
- .< 2007. 5. 29.,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1. 1
2. 1 ( 6 가 3.5 , 4.5 )
- [ 2012. 10. 31.]
- 15 ( ) 14 16 ( ) 9
- 8 .< 2007. 5. 29.,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1. . .
2. . .
3. 1 가
- .< 2007. 5. 29., 2012. 10. 31.>
- [ 2012. 10. 31.]
- 16 ( ) 5 4 7 .<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 ( )
1. ( ) )
2. ( ) )
3. 6 1 ( ) )
- [ 2012. 10. 31.]
- 17 ( ) 5 4 ( ) 10 .<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 1.

2.

[ 2012. 10. 31.]

18 ( ) 7 2

11

.< 2001. 10. 4., 2005. 9. 30.,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2016. 5. 16.>

1.

2. 7 3 1 , 1 2 2  
6

3. 1 3 3

( )

4. 「 」 87

가. : 가

. 「 」 53

: 「 」 52

5. 1 ( 6 가 3.5 , 4.5 )  
7 2

1

1

1

.< 2001. 10.

4., 2012. 10. 31., 2016. 5. 16.>

7 3 2

1

.< 2001. 10. 4., 2012. 10. 31.>

「 」

11

14 3

.< 2007. 5. 29., 2008. 3.

14., 2015. 1. 8.>

. , 4

가

1. , 5 .< 2012. 10. 31.>

6

:

5

2. 1 : 5

1

「 」 36 1

.< 2016. 5. 16.>

19 ( )

30

( 2

, 4

)

.< 1999. 8. 24., 2005. 9. 30., 2007. 5.

29.,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1. 9 1 2

2.

3. 「 」 5 2 6 1 1 • 2

3 2. 14 3 「 」

4. 18 1 1

20 ( ) 9 6 2 . < 2012. 10. 31.>

9 6 12 .<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4 1 4 「 」 가 가 .< 2007. 5. 29., 2008. 3. 14., 2012. 10. 31., 2014. 11. 19., 2015. 1. 8., 2017. 7. 28.>

20 2( • ) • • .<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 2001. 10. 4.]

21 ( 가 ) 16 2 가 .<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1. 16 2 1 가 ( " 가 " ) 가( " 가" )
2. 가 가( " 가" ) 가 1 가 .< 2012. 10. 31., 2013. 3. 24.>

22 ( 가 ) 가 가 가 가 1 .< 2005. 9. 30., 2008. 3. 14., 2013. 3. 24.> 가 가 가 .< 2008. 3. 14., 2013. 3. 24.>

22 2( ) 10 2 2 17 1 12 2 ( ) .<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1. 1
2. 1
3. 1
4. 22 4 2 1 22 5 2 1
5. 22 5 1 1
6. 2 ( 6 가 3 5 , 4 5 ) 1 12 3 .< 2008. 3. 12 4 .>

14., 2012. 10. 31., 2015. 1. 8.>

- 1. , , , ,
- 2. 가 , , ,

12 2 ( )

.<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 1. ( )
- 2. 1 ( )
- 3. 2 ( 6 가 3 5 , 4 5 )

12 5

( ) .<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 1.
- 2.

[ 2005. 9. 30.]

[ 2012. 10. 31.]

22 3( ) 17 6

12 6

.<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 1. 1
- 2. 1 ( 가 )
- 3. ( ) 1
- 4. ( 5 1 ) 1
- 5. 2 ( 6 가 3 5 , 4 5 )

5 , 가

[ 2005. 9. 30.]

22 4( ) 가 12

7

2012. 10. 31.>

.< 2012. 10. 31.>

[ 2005. 9. 30.]

22 5( • ) 17 1 6 가

< 2012. 10. 31.>

- 1.
- 2.



- 3.
- 4.
- 5.
- 6.

7. ( )  
22 4 1 가 17 4

.< 2012. 10. 31.>

[ 2005. 9. 30.]

22 6( ) 17 4  
12 8 ( )

( ) .< 2006. 6. 26., 2012. 10. 31.>

- 1.
- 2.
- 3.
- 4.
- 5.

6. ( )

1 「 」 36 1

( ) .< 2006. 6. 26., 2011. 2. 18., 2013.

3. 24.>

1 가 가

12 9 ( )

.< 2006. 6.

26.,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2

12 10

.< 2006. 6. 26., 2012. 10. 31.>

가 12 8

( ) .< 2006. 6. 26.,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 1.
- 2.

.< 2006. 6. 26., 2008. 3. 14., 2013. 3. 24.>

- 1.
- 2.

17 4 • 2

.< 2006. 6. 26.,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 2005. 9. 30.]

23 ( 가 ) 13 1 3 " "

.<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 1. 가
- 2.

3.

4.

5. 4

13

가

가

가

13

.<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2015. 1. 8.>

1. 13 1

가

2. 13 2

가

13

가

14

가

.<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2015. 1. 8.>

24 <1999. 3. 27.>

25 ( ) 23 3

26

3

.< 2012. 10. 31.>

1

23 2 1

.< 2012. 10. 31.>

2

.< 2004. 8. 7.,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 2011. 2.

18., 2012. 10. 31., 2015. 1. 8.>

1. :

2. :

3. :

4. 7 : 100 60

5. 4 7 :

100 50

26 ( )

3 (

3 )

1. 7 : 2017 1 1

2. 9 : 2017 1 1

[ 2017. 1. 2.]

< 55 ,1998. 4. 23.>

1 ( ) . , 9 <% : 9%> 1999

1 1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가		
+-----+					
-	+				
+-----+					
-	+				
3	(		)		1 3 3
4	(		)		.
5	(		)		.
6	(		)		.
.	.	(	)		.
7	(		)		.
		2002	1	31	.
8	(	가	)		가

9 ( ) 가

< 72 ,1998. 9. 17.>

< 111 ,1999. 3. 27.>

< 133 ,1999. 8. 24.> ( )

1 ( )

2 ( )

19 3 " " " " .

< 205 ,2001. 10. 4.>

10 2002 1 1 .

< 267 ,2004. 2. 2.> ( )

1 ( )

2 ( )

2 3 " " " " .

< 277 ,2004. 8. 7.> ( )

< 309 ,2005. 9. 30.>

2005 10 1 .

< 340 ,2006. 6. 26.> ( 「 」 )

< 372 ,2007. 5. 29.>

1 ( )

2 ( ) 1 3 1 3 가

3 ( )

< 390 ,2007. 11. 23.> ( )

1 ( )

2 22

23 ( )

7 1 " 「 」 7 8 1  
" " 「 」 45 60 2

24

< 4 ,2008. 3. 14.> ( 가 )

< 89 ,2008. 12. 31.> ( )

1 ( ) 2009 1 1

2 ( )

5 " " " " .

㉔

< 117 ,2009. 4. 10.>

1 ( )

2 ( )

2

< 332 ,2011. 2. 18.>

. , 1 5 1 6  
2

< 524 ,2012. 10. 31.>

1 ( )

. , 1

2014 1 1

2 ( )

) 11

14

3 ( )

) 18 5

4 ( )

) 1

5 ( )

) 1

, 가

6 ( )

) 1 9

7 ( )

) 3

3

)

,

( )

,

,

( )

( )

(

8 ( )

)

1

1

2016 12 31

1

9 ( )

)

1

가

< 1 ,2013. 3. 24.>( )

1 ( )

2 4

5 ( ) ⑰

⑱

3 1 , 2 , 4 , 5 1 , 6 ,  
2 , 14 1 7 , 21 1 2 , 2 , 22 1 • 2 , 22 6 2 •  
3 , 5 , 6 , 7 , 23 2 2 ,  
3 , 1 8 • 10 , 1 , 2 , 7  
7 , 12 8 , 12 9 , 13  
, 14 " " " " .

23 1 " " " " .

⑲ <63>

< 63 ,2013. 12. 30.>( )

2014 1 1 .

< 110 ,2014. 11. 19.>( )

1 ( )

2 ( )

20 3 2 2 " " " " .

< 127 ,2014. 12. 31.>( )

< 132 ,2015. 1. 6.>

1 ( )

2 ( )

1 3 1

< 134 ,2015. 1. 8.>( )

1 ( )

2

3 ( )

2 3 " " " " , "

"

7 1 • 2 , 14 1 , 4 , 3 ,

15 1 , 16 , 17 , 18 1 ,

4 , 19 , 20 2 • 3 , 20 2, 22 2 1 ,

2 , 3 , 4 , 22 3 1

, 23 2 1 , 3 , 25 3 , 4 , 2 2 ,

3 , 4 , 7 , < > 4 •

, 9 3 , 4 4 , 10 , 11 ,

12 , 12 2 , , 12 4 3 , 4

4 , 12 5 , 12 6 , 13 14 "

" "

8 12 3 " " " "

9 1 • 3 , 12 4 1 3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

12 4 4 (Remarks)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

⑰

< 190 ,2016. 5. 16.>

1 ( )

. < 2017.2.1>

1. 1 2 , 3 , 4 , 5 , 9 12 : 6

2. 1 , ,

: 2017 1 1

3. 1 , : 2019 1 1



4. 1 : 2017 2 1  
 2 ( ) 1 1 3  
 3 ( ) 1  
 1 2  
 . , 1 2  
 1  
 2017 12 31

. < 2017.2.1 >

1  
 1 3 ( )  
 ) ( )  
 1  
 1 4 1,000 ,

. < 2017.2.1 >

4 ( ) 1 2  
 1 ,  
 1 , 1 2  
 ,  
 , 1 , , 1 , 1 1  
 . <

2017.2.1 >

[ 2017.2.1 ]

5 ( )  
 1  
 6 ( ) 1 1  
 1 2 1 2 1  
 1 1 1 3 , 4 , 5 9  
 , 1 3 , 4 ,  
 5 9 1 ,  
 1 1 가  
 1 12

13 「 」 1 13 1

7 ( ) 9

2017 1 1 9 1

1.

2.

3.

4.

5.

1 17

8 ( ) 12 4

"REGIO - 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 "6 " "12 " , "6 months" "12 months" .

< 217 ,2017. 1. 2.>( )

1 ( ) .

2

< 223 ,2017. 2. 1.>

1 ( ) .

2 ( ) 12 2 1 6

3 ( ) 1 1,000 ,

4 ( ) 1

1.

- 2. 1,000 , 5  
6
- 3. 1,000 , 1  
3

< 238 ,2017. 6. 27.>

< 251 ,2017. 7. 28.>( )

< 304 ,2018. 10. 15.>

- 1 ( ) , 190  
1 5 1 1 2019 1 1
- 2 ( )  
1  
2018 7 1  
1 2020 7 1  
2018 7 1 5  
3 1
- 3 ( )  
1  
2018 7 1  
1 2020 7 1  
1
- 1. 2018 7 1 5  
1 3
- 2. 2018 7 1 5  
1 2 1

< 366 ,2019. 8. 20.> ( )

1 ( )

2 ( )

7 1 " 「 」 45 " " 「 」 " .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10. 15.>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제2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교육기간	
면허취득 교육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전자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인 상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또는 전자기관 관리	10일 교육과 6개월 원격교육	
	3급 항해사 또는 3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이 아닌 상선에 승무하거나 항해선인 어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자기관 관리	5일	
	1급 통신사부터 3급 통신사(전파통신급 또는 전파전자급)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통신직무	10일	
	4급 항해사 또는 4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인 상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5일 교육과 4개월 원격교육	
	4급 항해사 또는 4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이 아닌 상선에 승무하거나 항해선인 어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관 운전	3일	
	4급 통신사(전파통신급 또는 전파전자급)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통신직무	5일	
	5급 항해사 또는 5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인 상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3일 교육과 2개월 원격교육	
	5급 항해사 또는 5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이 아닌 상선에 승무하거나 항해선인 어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관 운전	3일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인 상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2일 교육과 1개월 원격교육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인 어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관 운전	2일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승무경력 없이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선박의 운항 및 기관의 운전	3일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필기시험과목 전부를 면제받아 6급 항해사면허, 6급 기관사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3일
		필기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아 6급 항해사면허, 6급 기관사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2일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급 항해사 이상, 3급 기관사 이상, 3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선박의 운항관리 또는 기관의 운전	10일
4급 항해사 이하, 4급 기관사 이하, 4급 운항사의 면허 또는 통신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선박의 운항관리 또는 기관의 운전	5일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2급 이하의 항해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선박의 운항	10일	
	영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한정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사람	수면비행선박 모의조종훈련	35시간	
			수면비행선박 실선 실습훈련	60시간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한정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사람	수면비행선박 모의조종훈련	50시간	
		수면비행선박 실선 실습훈련	100시간		
	영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상선면허를 가지고 동급 이하의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어선면허를 가지고 동급 이하의 상선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선박의 운항 및 영어	7일	
면허갱신 교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3급 항해사 이상, 3급 기관사 이상, 3급 운항사 이상,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선박의 운항관리 또는 기관의 운전	3일	
		4급 항해사 이하, 4급 기관사 이하, 4급 운항사,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선박의 운항관리 또는 기관의 운전	2일	
		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통신직무 또는 소형선박의 운항관리	1일	
보수 교육	기술교육	운항사 교육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운항사 면허를 받고 최초로 운항사의 직무를 행하려는 사람	선박의 운항관리	10일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1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의 면허, 1급 운항사(항해전문)부터 4급 운항사(항해전문)까지의 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가지고 레이더가 설치된 항해선에 최초로 승무하려는 사람	레이더관측·레이더기초지식 및 레이더항법	5일
			통신사면허를 소지하고 통신사 이상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 중 1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의 면허, 1급 운항사(항해전문)부터 4급 운항사(항해전문)까지의 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가지고 레이더가 설치된 항해선에 최초로 승무하려는 사람	레이더 정보·분석	2일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최초로 내항여객선 또는 항해선인 상선에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또는 전자기관사로 승무하려는 사람	선내 조직의 구성원으로 인적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용에 관한 교육	3일
		고전압 응용교육	1,000볼트 초과 고전압을 발전, 배전 또는 변압하는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 기관사, 운항사(기관전문) 또는 전자기관사로 승무하려는 사람	고전압 설비의 개요 및 작업안전에 관한 교육	1일
		전자예도장치교육	1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의 면허 또는 1급 운항사(항해전문)부터 4급 운항사(항해전문)까지의 면허를 가지고 전자예도장치	전자예도장치에 관한 지식과 활용 능력 배양	3일

		(ECDIS)가 설치된 여객선 또는 항해선인 상선에 최초로 승무하려는 사람		
	자동충돌예방교육	1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의 면허 또는 1급 운항사(항해전문)부터 4급 운항사(항해전문)까지의 면허를 가지고 자동충돌예방장치가 설치된 항해선인 상선에 최초로 승무하려는 사람	자동충돌예방장치에 관한 지식과 시뮬레이션 훈련	3일
안전 및 해양오염 방지 교육	탱키기초교육	「선원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최초로 유조선이나 케미컬탱키에서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로 승무하려는 사람(「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탱키교육 이수자는 제외한다)	화물의 특성·독성·위험, 위험통제, 인명보호, 오염방지절차	3일
	액화가스 탱키기초교육	최초로 액화가스탱키에 항해사, 기관사 또는 운항사로 승무하려는 사람(「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탱키교육 이수자는 제외한다)	화물의 특성·독성·위험, 위험통제, 인명보호, 오염방지절차	3일
	해양오염 방지교육	항해선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승무하려는 사람 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유지하려는 사람	해양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교육	3일(유지하려는 경우 2일)
	극지대역 운항선박 기초교육	극지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선장 또는 항해사로 승무하려는 사람	극지대역에서 선박의 운항에 관한 교육	4일
직무교육	유조선 직무교육	탱키기초교육을 이수하고, 3개월 이상의 유조선 승무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승무기간 중 3회 이상 적·양하 작업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유조선에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로 승무하려는 사람	안전규칙, 실무지침, 유조선 구조, 화물의 특성, 설비 보수관리, 비상절차	5일
	액화가스 탱키 직무교육	액화가스탱키기초교육을 이수하고, 3개월 이상의 액화가스탱키 승무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승무기간 중 3회 이상 적·양하 작업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액화가스탱키에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로 승무하려는 사람	안전규칙, 실무지침, 화학·물리학, 오염방지절차, 화물취급설비, 선내 작업절차, 비상절차	5일
	케미컬 탱키 직무교육	탱키기초교육을 이수하고, 3개월 이상의 케미컬탱키 승무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승무기간 중 3회 이상 적·양하 작업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케미컬탱키에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로 승무하려는 사람	안전규칙, 실무지침, 화물 특성, 선내 작업절차, 설비보수 관리, 비상절차	5일
	원양선 직무교육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 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으로 승무하려는 사람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2장제2조 또는 제3장제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선박의 운항관리, 기관의 운전 또는 통신 직무	5일(어선 또는 통신장의 경우에는 3일)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양수역(어선의 경우	선박의 운항관리,	5일 교육

		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 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으로 승무하려는 사람 (국제협약 제2장제2조 또는 제3장제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기관의 운전 또는 통신 직무	과 3개월 원격교육 (어선 또 는 통신장 의 경우에 는 3일)
	선 안 선 직 무 교 육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안수역(어선의 경우 에는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 톤 이상(어선의 경우에는 30톤 이상)선박에 선 장, 기관장, 운항장 또는 통신장(200톤 이상 선 박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승무하려는 사람(국 제협약 제2장제3조 또는 제3장제3조에 따른 교 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선박의 운항관리, 기관의 운전 또는 통신 직무	3일(어선 또는 통신 장의 경우 에는 2일, 30톤 미 만 상선의 경우에는 1일)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안수역(어선의 경우 에는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 톤 이상(어선의 경우에는 30톤 이상)선박에 선 장, 기관장, 운항장 또는 통신장(200톤 이상 선 박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승무하려는 사람(국 제협약 제2장제3조 또는 제3장제3조에 따른 교 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선박의 운항관리, 기관의 운전 또는 통신 직무	3일 교육 과 1개월 원격교육 (어선 또 는 통신장 의 경우에 는 2일, 30톤 미 만 상선의 경우에는 1일)
	예 인 선 직 무 교 육	최초로 예인선에 선장, 운항장, 항해사 또는 운 항사로 승무하려는 사람	선박운항 관리를 위한 모의운항시뮬 레이션	2일
	여 객 선 직 무 교 육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 로 하는 여객선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는 사 람	신대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관한 교육	3일
	리더십 및 관리 기술 직 무 교 육	내항여객선 또는 항해선인 상선에 선장, 1등 항 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 또는 1등 운 항사로 승무하려는 사람	신대 조직의 관리 자로 인적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용에 관한 교육	3일
	고 전압 직 무 교 육	1,000볼트 초과 고전압을 발전, 배전 또는 변압 하는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기관전문) 또는 1등 운항사(기관전문)로 승무하려는 사람	고전압 설비의 안 전관리 및 운용에 관한 교육	3일
	극지해역 운 항선박 직무 교육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하고, 극지해 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에서 항선박 직무 선장 또는 항해사로 2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승무하려는 사람	극지해역에서 선박 의 운항 관리에 관 한 교육	4일
필 기 시 험 번 제 교 육	영 제13 조제2항에 따라 필기 시험을 번 제 받으려	2급 항해사면허, 2급 기관사면허, 2급 운항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필기시험 관련과 목	20일
		3급 항해사면허, 3급 기관사면허, 3급 운항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필기시험 관련과 목	15일
		4급 또는 5급 항해사면허, 4급 또는 5급 기관	필기시험 관련과	10일



	는 사람	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목	
면접시험 면제교육	영 제13조제6항에 따라 면접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면접시험 관련과목	1일
소형선박 직무교육	영 별표 3 제4호에 따라 소형선박의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를 겸직하려는 사람		소형선박의 운항 또는 소형선박의 기관운전	3일

비고 :

1.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1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삭제 <2016. 5. 16.>
3. 원양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직종의 연안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3의2. 운항사 면허갱신 교육대상자의 경우 항해진공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해당하는 면허갱신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기관진공은 기관의 운전이 해당하는 면허갱신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삭제 <2016. 5. 16.>
5. 수면비행선박 모의조종훈련은 수면비행선박 실선 실습훈련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6. 표면효과진용선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위 표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35시간의 수면비행선박 운항관리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비행선박 실선 실습훈련 교육기간을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7. 비사업용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2분의 1이내의 범위에서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8. 국제협약에서 정한 교육과정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 표에서 정하는 교육과정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동 협약 당사국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9. 삭제 <2016. 5. 16.>
10. 위 표에서 "원격교육"이란 통신, 인터넷 등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1. 위 표에서 "항해선"이란 「선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 11의2. 위 표에서 "항해선인 상선"이란 항해선 중에서 어선을 제외한 선박을 말한다.
12. 위 표에서 "내항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13.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위 표의 해양오염방지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4. 통신사의 원양선 직무교육, 연안선 직무교육 또는 면허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면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5. 통신장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양선 직무교육(통신 직무 교육으로 한정한다)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6.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또는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여객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7. 위 표에서 "극지예역"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남극예역 및 북극예역을 말한다.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7. 7. 28.>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각각의 정지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회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면허취소인 경우(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1년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인명 또는 재산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기사 직무를 모범적으로 해운 사실이 인정된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에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때	법 제9조 제1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나.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때에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때	법 제9조 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다.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때	법 제9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면허 취소
라.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非行)이 있거나 인명(人命)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법 제9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년	면허 취소
마. 법 제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법 제9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기사면허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1항제5호	1개월	2개월	4개월
바. 업무정지기간 중에 승무한 때	법 제9조 제1항제6호	면허 취소	-	-
사. 「해사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년	면허취소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법 제9조 제2항	면허 취소	-	-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6. 5. 16.>

**수수료**(제25조제1항 관련)

구 분		금 액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의 신청		5천원
필 기 시 험 또 는 면 접 시험의 응 시	1급(항해사·기관사·운항사·통신사) 2급(항해사·기관사·운항사·통신사)	1만 5천원
	3급(항해사·기관사·운항사·통신사) 4급(항해사·기관사·운항사·통신사)	1만 4천원
	5급(항해사·기관사) 6급(항해사·기관사)	1만 3천원
	전자기관사	1만 4천원
	소형선박 조종사	1만원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1만 4천원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1만 4천원
	시험합격증명서의 신청	무료
면허증의 발급(재발급) 및 갱신 신청	무료	
면허증의 기재사항변경(정정) 신청	무료	
승무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및 갱신 신청	무료	
승무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	무료	

\* 비 고

1. 1급이나 2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또는 통신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2. 소형선박 조종사의 시험 등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4>

##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교육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교육기관의 장			
교육과정	직 종	정 원	교육기간
			년 월(실습 월)
			년 월(실습 월)
			년 월(실습 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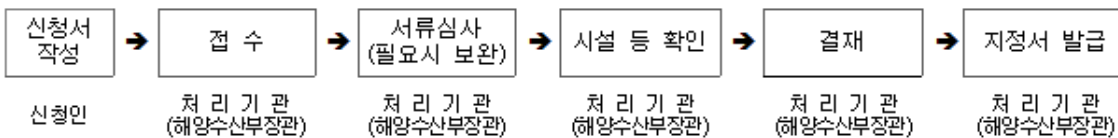
교육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 나. 교육시설, 실습선의 현황, 실습장비, 실습기간 및 실습계획 다. 교직원인 인적 사항·자격·교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 시간 라. 교육과정별 정원·입학자격·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마.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 내역 바.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 가. 지정교육기관지정서 나.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정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신청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4>

##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

교육기관명			
주소			
교육기관의 장			
교육과정	직 종	정 원	교육기간
			년    월(실습    월)
			년    월(실습    월)
			년    월(실습    월)
지정조건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8.>

##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주소			
선박명			선박번호	
선적항			선종	
항행구역				
총톤수			주기관출력(kW)	
자동화선박의 종류	제( )종 자동화선박			
자동운항설비 내역 (세부내역 별첨)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자동화선박으로 인정(변경인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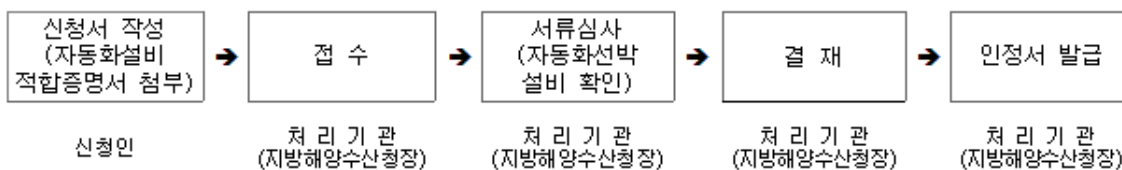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자동화선박의 설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수수료 5천원
------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8.>

## 자동차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서

신청인	주소					
	성명					
선박내역	선명		국적		총톤수	
	선적항		선종		주기관출력(kW)	
인정(변경인정) 등급						
인정(변경인정) 조건						
자동운항설비내역 (세부내역 별첨)						
비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선박임을 인정(변경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5. 16.>

## 응시원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시험 구분 (년도 회)	[ ]정기 [ ]임시 [ ]상시	응시직종별 등급	응시지역
	[ ]필기 [ ]면접 [ ]실기	면허발급 희망청	
응시면허	[ ]항해사([ ]상선 [ ]어선) [ ]기관사 [ ]운항사([ ]항해·[ ]기관) [ ]소형선박 조종사 [ ]교류 ([ ]상선 [ ]어선) [ ]통신사([ ]전파통신급·[ ]전파전자급) [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 ]중형) [ ]전자기관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폰) (전화번호: ) (e-mail)		
학 력	지정교육기관출신별	학교(원) ([ ]졸업 [ ]재학 [ ]수료)	사 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cm, 세로 4cm의 것
	실습기간	해상 개월, 육상 개월	
소지면허증	명칭	(번호: )	발급일
	면허	[ ]상선 [ ]어선 선종	항해구역
필기시험면제	구분	[ ]필기시험 전부 면제 [ ]필기시험 일부과목 면제	
	사유	(번호: ) "뒷면 참조 면제 사유 해당번호를 기재"	
과목합격 면제포기	구분	[ ]과목합격 이력을 포기하고 전과목 응시를 선택함	
	과목명	"뒷면 참조 유의사항 확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응시번호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귀하

기재요령 "※" 표시한 곳은 적지 마십시오.

-----자-----르-----는-----선-----

※ 응시번호	<b>응시표</b>
	(            년도            회            해기사시험)
성 명	생년월일
응시직종별등급	시 험 구 분            [ ]필기            [ ]면접
	년            월            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뒤 쪽)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유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로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선택적으로 시험에 응시함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시험 합격 유효기간 이내에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의 불비로 인해 면허발급이 거부되는 경우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체크
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함. (면접시험에 응시하고 면허 발급 시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제출 할 것을 확인함)	
2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 전부를 면제받고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함. (면접시험에 응시하고 면허 발급 시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제출 할 것을 확인함)	
3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고 일부 과목 필기시험만 응시하고자 함. (필기시험 일부과목만 응시하고 면허 발급 시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제출 할 것을 확인함)	
4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면접시험으로 면허를 재취득하고자 함. (면접시험에 응시하고 면허 발급 시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제출 할 것을 확인함)	
5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고 일부 과목 필기시험만 응시하고자 함. - 면제과목: 법규, 영어, 전문 - 응시과목: 항해, 운용 (필기시험 일부과목만 응시하고 면허 발급 시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제출 할 것을 확인함)	
6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함. (면접시험에 응시하고 면허 발급 시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제출 할 것을 확인함)	
7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의 비고 및 제6호의 비고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 일부 과목 필기시험만 응시하고자 함. (필기시험 일부 과목만 응시하고 면허 발급 시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제출 할 것을 확인함)	
8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에서 발생한 과목합격으로 해당과목을 면제받고 나머지 과목의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함.	
9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에서 발생한 과목합격이 있으나 해당과목 합격사실을 포기하고 전과목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함. (이 경우 이전에 발생한 과목합격은 효력이 상실됨을 확인함)	
10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고 일부 과목 필기시험만 응시하고자 함. [-면제과목: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응시과목: 전문(상선 또는 어선)]	

응시 자유의 사항	
1.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2.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학생증·선원수첩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필기시험 답안카드(O.M.R카드)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하며, 컴퓨터(CBT) 시험 응시자는 모니터를 통해 시험문제를 풀고 마우스로 답안을 체크하므로 최소한의 컴퓨터 사용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4.	응시자는 시험시작 전에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확인한 후 답안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 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원서에 적은 사항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선박직원법」 제5조의3 및 제9조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 또는 합격결정 취소, 면허 취소 또는 처분일로부터 2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5. 16.>

제 호 <h2 style="margin: 0;">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h2>			
성 명		생년월일	
응시직종별등급		합격년월일	. . .
응시면허	[ ] 상선 [ ] 어선		
시험결과	필기시험([ ] 면제 [ ] 합격) 면접시험([ ] 면제 [ ] 합격)		
필기시험 실시기관명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년도 회 해기사시험)		
용 도	[ ] 면접시험용 [ ] 면허신청용 [ ] 기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기사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span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span> <span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left: 10px;">직인</span> </div>			

-----자-----르-----는-----선-----

**유의사항**

해기사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선박직원법」 제5조에 따른 면허요건을 갖추어 면허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 7호서식] <개정 2016. 5. 16.>

##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재발급은 1일)
------	-----	------------------

신청인	성명(한글)	(영문)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선원수첩번호	□□□□□-□□□□□□	국적	* □□ ( )	
최종학력	1. 대졸 이상 2. 전문대졸 3. 고졸 4. 중졸 5. 기타	해기사 시험	직종별 등급	
지정교육기관 출신별	□□ 학교(원) 과(과정) ( [ ] 졸업 [ ] 재학 [ ] 수료)		구 분	( )년도( )회 [ ] 정기 [ ] 임시

소지면허	번호	□□-□□-□□-□□□□ ( )
	한정선박	1. 한정 없음[ ] 2. 상선[ ] 3. 어선[ ] 4. 특수용도 선박[ ] 5. 수상레저면허(요트[ ],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 ]) 6. 수상레저면허(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 동력요트[ ]) 7. 항해선이 아닌 상선[ ] 8. 항해선이 아닌 어선[ ] 9. 수면비행선박면허(표면효과전용선[ ], 비사업용조종사[ ])
	한정수역	1. 한정 없음 2. 국내항 3. 기타

신청면허	시험기관	* □□ ( )	합격일	년 월 일
	종 류	□□ ( )	응시번호	
	한정선박	1. 한정 없음[ ] 2. 상선[ ] 3. 어선[ ] 4. 특수용도 선박[ ] 5. 수상레저면허(요트[ ],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 ]) 6. 수상레저면허(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 동력요트[ ]) 7. 항해선이 아닌 상선[ ] 8. 항해선이 아닌 어선[ ] 9. 수면비행선박면허(표면효과전용선[ ], 비사업용조종사[ ])		
	한정수역	1. 한정 없음 2. 국내항 3. 기타		

*발급면허	종 류	□□ ( )	발급일	년 월 일
	번호			

발급사유	1. 신규 2. 갱신 3. 멸실 4. 훼손
------	-------------------------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6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p>신청인 제출서류</p>	<p><b>&lt; 발급신청 &gt;</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1부 다만,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선박에 근무 중인 사람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 선원수첩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li> <li>2. 「선박직원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합니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면허취득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li> <li>3.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보수교육 중 레이다시뮬레이션교육, 리더십 및 팀워크교육, 전지해도장치교육, 자동충돌예방교육,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li> <li>4.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및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li> <li>5. 영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통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합니다)</li> <li>6. 영 제9조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li> <li>7.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것)</li> <li>8.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가.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해당 교육과정의 이수증</li> <li>9.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                  가.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과목의 승무경력 증명서류와 관련된 여선원부등본(여선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그 선박소유자 및 선박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승무한 선박이 감척(減隻)되거나 폐선된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10.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응시하려는 면허와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면허를 소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11.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12.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13. 영 별표 2 제5호 비교 및 제6호 비교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ol> <p>※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원수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으로 교육이수 상황 또는 승무경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p>	<p>수수료 없음</p>
	<p><b>&lt; 재발급신청 &gt;</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면허증(면허증이 찢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li> <li>2.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기재한 서류 1통(면허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li> <li>3.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것)</li> </ol>	
<p>담당공무원 확인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승무경력 증명기간 안에 군에 복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li> <li>2. 선박원부(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이 상선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3.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li> </ol>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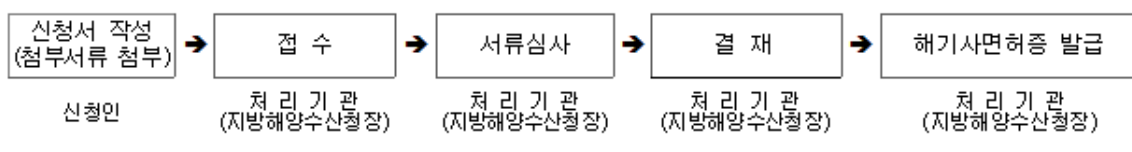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란의 ( )에 여권번호를 기재하고, 성명란에는 영문으로 기재하십시오.
2. 재발급신청의 경우에는 소지면허, 신청면허, 발급면허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3.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가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명, 주소, 소지면허(번호, 한정선박), 신청면허(한정선박), 발급사유란만 기재하십시오.
4. “\*” 표시한 곳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처리절차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8.>

###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

용지 번호	발급 일자	인적사항				면허사항						
		한글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험실시 기관	시험 합격일	면허 번호	면허 한정	유효기간 만료일	발급사 (1.신 2.재발 3.갱)	
		영문성명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5. 16.>

(제1쪽)

## 해기사면허증

### CERTIFICATE OF COMPETENCY

이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The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is hereby extended until).....  
 .....까지 연장함

(관인: Official seal) .....

.....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명(Signature of duly authorized official)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이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The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is hereby extended until).....  
 .....까지 연장함

(관인: Official seal) .....

.....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명(Signature of duly authorized official)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210mm×297mm[백상지 120g/㎡]

(제2쪽)

(관인: Official Seal)	면허의 종류	
	생년월일 (Date of birth of the holder of the certificate)	.....월(Month).....일(Day).....년 (Year)
	면허증 소지자의 서명 (Signature of the holder of the certificate)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  
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것

대한민국(THE REPUBLIC OF KOREA)

1978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과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해기사면허증(CERTIFICATE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대한민국 정부는           가 위 개정협약 제           조의 규정에 따라 해기사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과           까지 또는 이 면허증의 유효기간에 대한 갱신기간의 만료일까지, 아래에 표시된 면허의 한정을 조건으로 명시된 등급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해기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합니다(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ertifies that           has been found duly qualifi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of the above Convention, as amended, and has been found competent to perform the following function, at the levels specified, subject to any limitations indicated until           or until the date of expiry of any extension of the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as may be shown overleaf).

기능(FUNCTION)	등급(LEVEL)	적용제한<LIMITATIONS APPLYING (IF ANY)>

(제3쪽)

이 면허증의 소지자는 승무기준에 명시된 다음의 직무로 승무할 수 있습니다(The lawful holder of this certificate may serve in the following capacity or capacities specified in the applicable safe manning requirements of the Administration).

직무(CAPACITY)	적용제한<LIMITATIONS APPLYING (IF ANY)>		
교육과정 이수 여부(COURSE COMPLETION STATUS)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Radar Simulation Training Course)	예(Yes) <input type="checkbox"/> , 아니오(No) <input type="checkbox"/>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Leadership and Teamwork Training Course)	예(Yes) <input type="checkbox"/> , 아니오(No) <input type="checkbox"/>
전자해도장치교육 (ECDIS Training Course)	예(Yes) <input type="checkbox"/> , 아니오(No) <input type="checkbox"/>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Leadership and Managerial Skill Training Course)	예(Yes) <input type="checkbox"/> , 아니오(No) <input type="checkbox"/>
자동충돌예방교육 (ARPA Simulation Training Course)	예(Yes) <input type="checkbox"/> , 아니오(No) <input type="checkbox"/>		

면허증 번호(Certificate No.) ..... 발급일(issued on) .....

(관인: Official Seal) .....

.....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명(Signature of duly authorized official)

.....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협약 부속서 1/2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승선 중에는 이 면허증 원본을 선내에 비치하여야 합니다(The original of this certificate must be kept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2 paragraph 11 of the Annex of the Convention while serving on a ship).

.....  
지방해양수산청장 (서명 또는 인)

(DIRECTOR GENERAL OF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제4쪽)

## 유의사항(NOTE)

1. 해기사는 법규를 준수하고 선박항행의 안전과 해양환경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Certificated officers must observe rules and make effort to ensure the safe operation of ships and the preservation of marine environment.)
2. 이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그 유효기간(2쪽의 유효기간 참조)이 만료되기 전에 「선박직원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면허증의 갱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12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This certificate is valid for a period of 5 years and it is required to apply revalidation of endorsement with being met the requirements of the paragraph 2 of Article 7 of Ship Officer's Act prior to its expiry. The application for revalidation is allowed within 12 months prior to the date of expiry of this endorsement.)
3. 이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This certificate must not be given or lent to other person.)
4.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면허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In case that a notice of suspension or cancellation of the endorsement was given he or she shall submit his/her certificate to the Director General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within 30 days from that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8.>

##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국적	※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 )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선원수첩번호	□□□□□-□□□□□
--------	-------------

변경(정정)항목	변경(정정)내용		※ 코드
	을(를)	(으)로	

인적 사항	생년월일		
	성명		

면허 사항	종류		
	번호		
	발급기관		
	발급일		
	면허일		

기타사항		
------	--	--

「선박직원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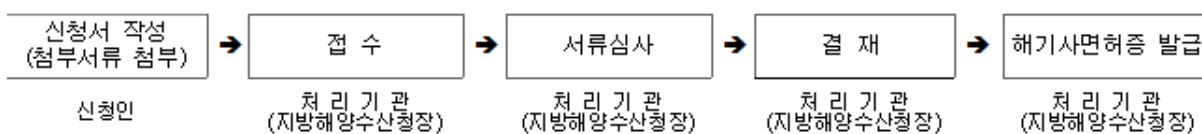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면허증 2. 변경(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1. 외국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을 영문으로 기재하시고, 내국인은 여권번호란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2. “※” 표시한 곳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5. 16.>

##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한글)	(영문)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선원수첩번호	□□□□□-□□□□□□	국적	※ □□□□ ( )	
--------	--------------	----	------------	--

소지면허	번호	□□-□□-□□-□□□□		
	종류	※ □□□□		
	한정선박	1. 한정 없음[ ] 2. 상선[ ] 3. 어선[ ] 4. 특수용도 선박[ ] 5. 수상레저면허(요트[ ],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 ]) 6. 수상레저면허(총톤수 55톤 미만 모터보트[ ], 동력요트[ ]) 7. 항해선이 아닌 상선[ ] 8. 항해선이 아닌 어선[ ] 9. 수면비행선박면허(표면효과전용선[ ], 비사업용조종사[ ])		
	한정수역	1. 한정없음[ ] 2. 국내항[ ] 3. 기타[ ]		

※ 갱신면허	번호	□□-□□-□□-□□□□		
	발급일	년	월	일

갱신요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기간	( )년 ( )월
	갱신교육일시	년 월 일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 18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면허증(선박에 승무 중인 자는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li> <li>2. 「선박직원법」 제7조제3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원수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으로 교육이수 상황 또는 승무경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li> <li>3.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통신사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li> <li>4. 「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1부 다만,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선박에 승무 중인 사람: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 선원수첩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5.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것)</li> </ol>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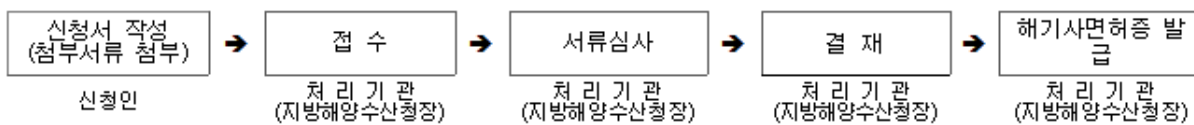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유의 사항

1. 외국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을 영문으로 적으시고, 내국인은 여권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2. "\*" 표시한 곳은 적지 않습니다.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8.>

제 호  <b>해기사 행정처분 결과통지서</b>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면허명		면허증번호	
처분내용	<input type="checkbox"/> 면허취소 <input type="checkbox"/> 업무정지( 월) <input type="checkbox"/> 견책		
처분사유			
「선박직원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    )지방해양수산청장 <span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5px 10px; color: orange;">직인</span> </div>			
※ 알림 1.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업무의 정지기간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p><b>&lt;발급 신청 시&gt;</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기사면허증 사본 1부</li> <li>2. 건강진단서 1부</li> <li>3. 대한민국 선사와 계약한 근로계약서 사본 1부</li> <li>4.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해기사면접시험 합격증 사본 1부 또는 동 규칙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해사법규 교육이수증 사본 1부</li> <li>5.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기초 및 상급안전교육</li> <li>나. 레이더시뮬레이션 교육(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합니다)</li> <li>다. 레이더 APPA교육(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합니다)</li> <li>라. 전자해도장치 교육</li> <li>마. 선교자원관리 교육</li> <li>바. 기관실자원관리 교육</li> <li>사. 승선헌 선박의 선박직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합니다)</li> </ul> </li> <li>6.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li> </ol>	수수료 없음
	<p><b>&lt;재발급 신청 시&gt;</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승무자격증(승무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2. 승무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 1부(승무자격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3.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li>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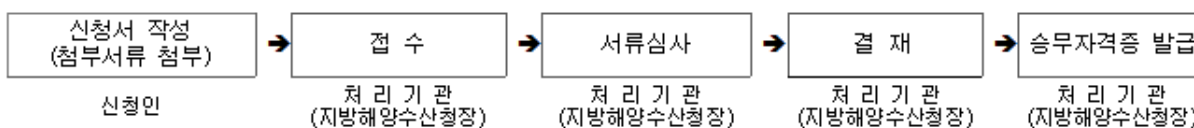
**작성 방법**

1. 영문기재 항목: 성명, 국적, 직무, 적용제한, 승무직종, 승무등급
2. “\*” 표시한 곳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안내사항**

신청 시 최소 처리기간은 외국인해기사 국가의 해기사면허 증명문서의 회신일부터 3일입니다.

**처리절차**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15.1.8.>

### 승무자격증 발급대장

( )자

일련 번호	용지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사유	인적사항				승무자격증사항				수령자 확인	
				성명	여권번호	소속회사(주소) (연락처, 담당자)	국적	승무자격증 번호	승무직종	승무등급	유효기간		

(364mm×28)





(2쪽)

(관인: Official Seal)

승무자격증 번호 Endorsement Number	
--------------------------------	--

대한민국(THE REPUBLIC OF KOREA)

1978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과 그 개정규정에 따라 해기사면허증이 인정된 것을 증명하는 승무자격증(ENDORSEMENT ATTESTING THE RECOGNITION OF A CERTIFICATE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대한민국정부는 정부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에게 발급된 증서번호 의 면허가 위 개정협약의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자격을 갖추었다는 것과 까지 또는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에 대한  
 갱신기간의 만료일까지, 아래에 표시된 면허의 한정을 조건으로 명시된 등급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해기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합니다(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ertified that certificate No. issued to by or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has been found duly qualified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f  
 regulation 1/10 of the above Convention, as amended, and the lawful holder is authorized to  
 perform the following function, at the levels specified, subject to any limitations indicated until  
 or until the date of any extension of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as  
 may be shown below).

기능(FUNCTION)	등급(LEVEL)	적용제한<LIMITATIONS APPLYING(IF ANY)>



(4쪽)

## 주의사항(Remarks)

1. 해기사는 법규를 준수하고 선박항행의 안전과 해양환경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Certificated officers must observe rules and make effort to ensure the safe operation of ships and the preservation of marine environment).
2.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그 유효기간(2쪽의 유효기간 참조)이 만료되기 전에 「선박직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승무자격증의 갱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12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This endorsement is valid for a period of 5years and it is required to apply revalidation of endorsement with being met the requirements of the paragraph 2 of Article 7 of Ship Officer's Act prior to its expiry. The application for revalidation is allowed within 12 months prior to the date of expiry of this endorsement).
3. 이 승무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This endorsement must not be given or lent to other person).
4. 승무자격증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승무자격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In case that a notice of suspension or cancellation of the endorsement was given he or she shall submit his/her endorsement to the Director General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within 30 days from that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5.1.8.>

## 승무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한글) <span style="float: right;">(영문)</span>	
	생년월일	여권번호
	소속회 사명 주소 <span style="float: right;">(전화번호: )</span>	
선원수첩번호		
변경(정정)항목	변경(정정)내용	
	을(를)	(으)로
승무 자격증 사항	승무직종	※ 코드
	승무등급	
	유효기간	
	기타	
기타사항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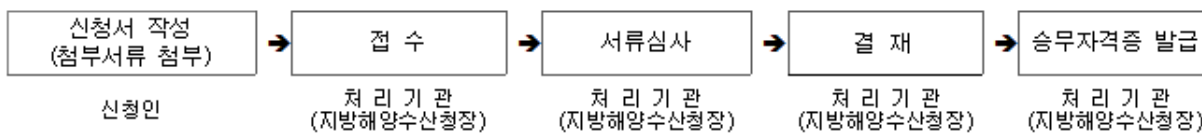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승무자격증 2. 변경(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 작성 방법

1. 성명란에는 영문으로 기재하십시오.
2. “\*” 표시한 곳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의7서식] <개정 2012.10.31>

<b>년도([ ] 정기 [ ] 임시)시험 외국인해기사 면접시험 응시원서</b>		사진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것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선원수첩번호					
소지면허	면허번호				
	직무				
	적용제한				
	유효기간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라 승무자격증 취득을 위한 외국인 해기사 면접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r> <td style="padding: 5px;">응시번호</td> </tr> <tr> <td style="height: 20px;"></td> </tr> </table>		응시번호		<b>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b> 귀하	
응시번호					
첨부서류: 해기사면허증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의8서식] <개정 2013.3.24>

##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교육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교육기관의 장		
교육과정	과정명	정원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에 따라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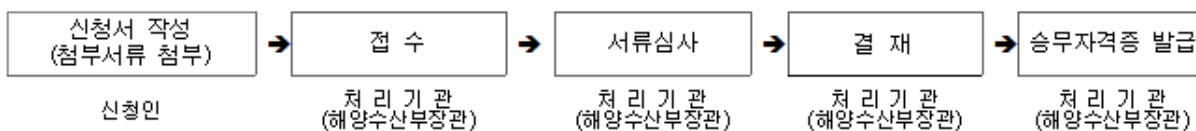
년      월      일

**교육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 나. 교육시설 현황 다. 교직원의 인적사항·자격, 교직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라.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마.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내역 바.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지정신청의 경우 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서 나.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의9서식] <개정 2013.3.24>

##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

교육기관명			
주소			
교육기관의 장			
교육과정	과정명	정원	기간
지정조건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12호의10서식] &lt;개정 2012.10.31&gt;

No.

# 교육이수증

## (CERTIFICATE)

사진

(3.5cm×4.5cm)

성명(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여권번호(Passport No.):  
 해기사면허증 번호(Certificate No.):

다음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Every training course described hereafter has bee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of '78 STCW Convention as amended.

이수과정 (COURSE)	교육기간 (PERIOD)	유효기간 (VALIDITY)

지정교육기관의 장

PRESIDENT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14호서식] &lt;개정 2015.1.8.&gt;

<b>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서</b>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선명	선박의 크기 (총톤수·주기관추진력)	항행구역	무선설비종류
	:G/T :KW		
외국선박	국적:	선박소유자:	
완화허가 내용	해당직종의 직무별 법정 자격(을)		직무별 완화자격(으로)
허가조건			
<p>「선박직원법」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b>해양수산부장관</b>            ( )지방해양수산청장         </p>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left: 100px;"> <b>직인</b> </div>			

210mm×297mm(백상지 80g/㎡)